
인명구조사 2급 실기평가표

인명구조사 교육·시험위원회

인명구조사 2급 실기평가표

목 차

□ 평가일반

- ① 실기평가 유의사항 1
- ② 총괄 채점표 2

□ 기초 역량 평가

- ① 기초체력 및 수영능력 3

□ 구조기술 평가

- ① 수중 인명구조 4
- ② 수상 인명구조 5
- ③ 로프 하강 및 등반 6
- ④ 수직구조 7
- ⑤ 맨홀 인명구조 8
- ⑥ 수평구조 9
- ⑦ 교통사고 인명구조 10

인명구조사 2급 실기평가 유의사항

1. 유의사항

1. 평가관은 훈령에 의해 지정된 자로 하며 본 평가표는 접수 후 비공개 원칙이다.
(평가관은 시험운영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보안, 공정성, 언행, 행동, 안전수칙 등)
2. 평가관은 평가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안전요원의 배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발생 우려 시 즉시 평가를 중지하고 정위치 한다.
3.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직접적인 사항 위반 시에는 실격 처리한다.
*응시자 본인의 안전, 평가 결과물, 응시자의 불안정한 행동 등으로 평가관이 판단한다.
4. 평가관 및 응시자는 본인 여부(응시자의 응시표 및 신분증)를 상호 확인해야 한다.
5. 시험 접수 후 응시자는 무단행동 금지 및 평가관(운영요원)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실격처리 할 수 있다.
6. 모든 평가는 평가관의 “실시” 지시에 복창 후 실시하고 완료 후 평가관에게 “완료” 보고 후 평가관의 지시에 따르며, 제한시간 내에 실시하는 평가는 평가관이 종료(정지)신호를 알리면 즉시 모든 행동을 정지하고 평가관의 통제에 따른다.(잔류행동 1회시 부정행위 실격 처리)
7. 평가항목 중 세부항목 미수행하거나 부적절 또는 순서에 준하여 해당 항목을 실시하지 않고 다음 항목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항목 “0점(별도의 평가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
8. 주요항목(실격으로 표기 항목)을 미실시한 상태로 완료보고를 하거나 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 또는 시간 초과를 염두에 두고 미완료 상태에서 완료 보고 시 불합격
9. 평가장비는 평가 전 응시자 충분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평가관에게 질문한다.(본인책임)
10. 평가가 시작되면 종료 전까지 재 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2. 평가 진행방법

1. 인명구조사 2급 실기평가는 기본역량평가 2개 항목과 구조기술평가 7개 항목으로 총 9개 항목이며 기본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구조기술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구 분		평 가 항 목	
인명구조사 2급	기본역량평가	① 기초체력측정	② 기초수영능력
	구조기술평가	① 수중인명구조 ③ 로프 하강 및 등반 ⑤ 맨홀인명구조 ⑦ 교통사고 인명구조(에어백, 유압장비)	② 수상인명구조 ④ 수직구조 ⑥ 수평구조

2. 교통사고 인명구조에서 에어백과 유압장비 중 평가관이 지정하는 1개 종목을 실시한다.
3. 항목별 평가방법은 단계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평가항목 진행은 평가관의 지시에 의한다.
* (응시자) “하강준비 끝” “등반준비 끝” → (평가관) “하강” “등반”
4. 평가 시작 전 장비점검 등 평가 준비를 위한 시간 약 3분을 응시자에게 제공한다.
5. 감점합계가 60점 초과 및 제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6. 최종합격은 각 평가항목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7. 각 항목의 감점이 해당 항목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점수 0점(단, 공통사항에 감점기준 기재된 경우 별도 감점 적용)

인명구조사 2급 총괄 채점표

1. 응시자 인적사항

응시번호		소속		계급		성명	
------	--	----	--	----	--	----	--

2. 평가항목 및 점수

구분		평가항목	항목수	평가수	비고
기본역량 평가	1	기초체력측정	합/불		
	2	기초수영능력(수영, 입영, 잠영)	합/불		
구조기술 평가	1	수중 인명구조	100		
	2	수상 인명구조	100		
	3	로프 하강 및 등반	100		
	4	수직구조	100		
	5	맨홀 인명구조	100		
	6	수평구조	100		
	7	교통사고 인명구조(에어백, 유압장비)	100		1개 항목 지정

최종평가결과

합격		불합격		총점 (평균)	()
----	--	-----	--	------------	-----------

인명구조사 2급 기초역량 평가표

기초역량평가<기초체력, 기초수영>

응시번호		성 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 비 물 : 기동복(활동복, 편의복), 기동화(운동화 가능), 수영모, 수경, 수영복(전신 또는 부력을 가진 수영복 불가)
- 평가장비 : 앰프(왕복달리기 음원), 초시계, 호각, 레스큐 튜브

종 목	평 가 항 목	
기초체력	1. 20m 왕복오래달리기를 음원에 맞춰 60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60회까지 음원시간 내 20m라인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선 출발하는 경우 실격 <평가관 2회 구두 및 손을 들어 경고 → 3회 실격 >	
기 초 수 영 능 력	수영	2. 제한시간(5분 이내)에 영법에 관계없이 200m 거리를 수영해서 갈 수 있어야 한다. * 수면 이동 및 방향전환 시 신체일부가 바닥에 닿는 경우 실격 * 수면 이동 중 벽면(방향 전환 시는 제외) 또는 라인을 잡는 경우 실격 * 방향 전환 시 벽면을 잡는 동작과 방향전환의 동작이 연속되지 않을 경우 실격
	입영	3. 총 3분을 실시하되, 신체를 수면과 수직으로 유지한 상태로 최초 2분은 구강(아래 입술)이 수면 위로 노출되어야 하고, 남은 1분은 구강 및 양 손목 이상이 수면 위로 노출된 상태로 떠 있어야 한다. * 몸통 회전(90° 이상), 구강이 수면아래, 몸 또는 머리(귀가 수면에 닿는 경우)가 누운 자세, 이동하는 경우 실격 * 수난구조훈련장 벽면, 지지물 등에 접촉하거나 다른 응시생과 신체접촉 등으로 평가를 방해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실격 * 평가기준을 불분명한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평가관 1회 구두경고 → 2회 실격 >
	잠영	4. 수중(몸 전체가 물 속)에서 출발하여 25m이상 이동(영법은 자유) * 최종 통과지점(25m) 이내에 신체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실격 (예 : 머리, 엉덩이, 손, 팔, 발, 다리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 25m 통과 기준 : 출발 반대편 25m 지점 벽면을 손으로 터치

평 가 결 과			
기초체력 : 60회 이상 □, 60회 미만 □	합 격		불합격
입 영 : 3분 이상 □, 3분 미만 □	합 격		불합격
잠 영 : 25m이상 □, 25m 미만 □	합 격		불합격
기초수영(제한시간 5분) : 분 초	합 격		불합격

인명구조사 2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1. 수중 인명구조

(일부 항목 제한시간 부여)

응시번호	성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비물 : 잠수장비세트(형식제한 없음), 잠수모(수모불가), 오리발(스킨핀 불가), 습식잠수복(3mm이상, 반팔 및 튜넥제외), 다이브컴퓨터(선택사항)
- 평가장비 : 로프(8m), 상승하강, 수색장비 일체(앵커 6Kg 2개 등)

진행단계	평가항목	항목점수	평가점수
준비	응시자는 잠수복을 착용 후 평가장비를 지정된 장소에 정렬하고 시작지점에 정위치한다. * 모든 장비는 평가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여 조치하고 평가간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여 진행이 불가한 경우 불합격		
장비결합 및 착용 (15)	1. 잠수장비 결합(바닥에 정렬된 장비를 결합) → 잠수장비 착용 ■ 실린더 및 O링점검 → BC결합 및 결합상태 점검 → 호흡기 결합 → 호흡기 BC연결 → 실린더개방 → 장비가능 점검<장비결합완료> / <장비착용> 웨이트착용 → 장비착용 → 오리발 및 마스크착용 → OK수신호 * 장비결합시간이 3분을 초과하는 경우 감점, 4분을 초과하는 경우 실격 <제한시간 내 O링 교환가능> * 평가관의 장비결합 실시부터 응시생의 장비결합완료 복창까지 시간을 측정<장비착용 제외>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한 경우 감점 * 실린더점검(외관, O링), 단밸브형식(호흡기O링), BC결합 등 장비 점검 부적절 감점 * 호흡기의 연결(실린더, BC), 실린더개방 방법, 웨이트 등 잠수장비 착용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 * 장비점검 미실시 및 실린더의 개방 압력(공기량)이 150bar 이하인 경우 실격	-15	
입수 (10)	2. 평가관 입수신호 → 입수지점 확인 → 서서입수 → 장비이상유무확인 → OK수신호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한 경우 감점 * 서서입수 동작 부적절하거나 입수 후 BC양성부력 미흡으로 구강(호흡기)이 잠기는 경우 감점	-10	
하강 (15)	3. 평가관의 하강신호→평가자의 하강수신호→하강라인을 보며 하강→2M정지후 OK수신호→평가관의 하강신호→평가자 하강수신호 후 하강 * 2m 안전정지 시 부력(상하±50cm) 유지하지 않을 경우 감점 * 하강라인을 잡을 경우 감점 * 하강라인 1m 이상 이탈시 감점 * 하강자세가 부적절 경우 감점 * 하강 중 수면상승 또는 압력평형 부적절로 상승 후 재하강하는 경우 감점	-15	
평가관 임의의	호흡기찾기 4. 무릎앉아 대기 → 평가관 실시신호 → 평가자 실시신호 → 호흡기 찾기(기울어 찾기) 실시 → 마스크 탈부착 실시 → 마스크 물빼기 → OK수신호 * 주 호흡기 찾기(기울어 찾기) 자세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한 경우 감점 * 호흡기 찾는 동안 소량의 공기 배출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감점 * 마스크 물빼기가 부적절하거나 수경에 물이 차있는 경우 감점(2회까지 시도인정)	-20	
	장비탈부착 4. 무릎앉아 대기-평가관의 실시신호-평가자 실시신호-BC공기배출-BC탈착-장비정렬-역순착용-OK수신호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한 경우 감점 * 장비 정렬 시 호흡기의 고임 등 정렬하지 않은 경우 감점 * 자세가 불안정하거나 BC이탈 및 공기통 상승하는 경우 감점 * 장비착용 시 각 벨트결착·끈 조절·고임·호흡기(압력게이지) 끼임 등 착용 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 * 평가관 실시 신호부터 실시완료 수신호까지 3분을 초과하는 경우 감점	-20	
수색 (20)	5. 2인 1조 짝-스테이 수색 <평가관 실시신호 → 수색실시 → 평가관 종료신호> * 짝스테이 수색방법 부적절 감점(상호 수신호, 개별행동, 로프를 20cm이상 띄우거나 끌고가는 경우) * 수색 도중 손 이외의 신체가 바닥에 닿은 경우 감점(방향전환 시 제외) * 앵커 이동 시 앵커가 바닥에 끌림 경우 감점	-20	
상승 (20)	6. 평가관의 상승신호→평가자의 상승수신호→상승라인을 보며 상승→2미터 안전정지(10초)→평가관의 상승신호→평가자 상승수신호→상승라인을 보며 상승 수면 부력확보→OK수신호 * 왼손으로 공기조절장치를 파지하지 않거나 상승자세(수면안전확인 및 상하 반복)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 * 2m 안전정지 시 부력(상하±50cm) 유지하지 않을 경우 감점 * 상승라인 1m 이상 이탈시 감점 * 상승 후 부력조절기(BC)에 부력확보 미실시한 경우 감점 * 상승라인을 잡을 경우 감점	-20	
공통사항	※ 평가도중 공기통 등 장비이탈 및 장비이상 또는 수준미흡으로 평가진행이 불가한 경우 실격 ※ BC내에 웨이트를 넣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임한 경우 실격 ※ 평가관에게 평가표에 기재된 실시신호 및 OK수신호를 미실시하거나 부적절한 경우(해당항목별 5점 감점) ※ 각 항목의 감점이 항목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점수 0점(공통사항 추가 감점 가능)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		

평 가 결 과	100	
제한시간 : 일부 항목 제한시간 부여	합 격	불합격

인명구조사 2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2. 수상 인명구조

(제한시간 : 1분 10초)

응시번호		성 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 비 물 : 수모 또는 잠수모, 마스크, 스노클, 오리발, 습식잠수복(3mm이상, 튜닉이나 반팔제외)
- 평가장비 : 마네킹(약25kg), 수중원형장애물(지름 약1m)

진행 단계	평 가 항 목	항목 점수	평가 점수
준비	응시자는 개인(평가)장비를 착용하고 시작지점에 정위치한다. * 모든 장비는 평가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평가관에게 요구한다.		
점검 (10)	1. 스킨장비 착용(슈트, 오리발, 마스크, 스노클)한 상태에서 시작 → 입수지점 안전확인 → 입수 (안전입수) → 장비의 이상유무 점검 → 평가관에게 신호(OK) * 입수지점 확인을 하지 않거나 수면을 바라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감점 * 앉아입수(안전) 동작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 * 최종적으로 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않거나 OK 수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감점 ⇒ 평가관은 OK 수신호를 응시자의 출발준비완료 신호로 간주	-10	
이동 (30)	2. 평가관 출발신호(호각) → 수면이동 → 수중장애물 통과 → 수면이동 * 시선을 전방으로 한 영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수면 이동 시 스노클을 물고 전방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 감점, 잠영으로 계속 이동하는 경우 감점 * 출발신호 전에 출발할 경우 매회 감점(중복감점 적용) * 수중장애물 통과 시 장비 및 신체 일부가 장애물과 닿는 경우 감점 * 수중 장애물을 통과하지 않거나 수중 장애물 통과 시 장애물을 손(팔)으로 잡고 통과하는 경우 “0점” 처리	-10 -20	
인양 및 운반 (60)	3. 반환점에 있는 요구조자(마네킹 25Kg)를 인양하여 출발점까지 운반 * 잠영능력 부족 등으로 마네킹을 한 번에 인양하지 못한 경우 감점. 2회 실격 ⇒ 인양 시 신체가 바닥에 닿거나, 반환점의 벽면을 닿는 것은 허용(감점 아님) * 인양 완료시점에서 방향전환을 위해 벽면이나 데크 또는 라인을 잡거나 미는 경우, 인양 완료시점과 운반출발 사이에 멈춰선 경우 감점 * 마네킹의 양 거드랑이를 파지하지 않고 다리, 목, 한 거드랑이 등을 잡고 이동하는 경우 감점 * 구조자(응시자)의 구강 또는 마네킹의 구강(입)이 물에 잠긴 경우 매회 감점 <항목점수 “60점” 까지 감점> * 구조자·마네킹 구강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계속 이동 시 실격 * 운반 시(인양부터 도착까지) 마네킹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 감점 ⇒ 단, 진행방향을 확인하는 경우 제외하며, 운반 시에는 스노클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마네킹 운반 중에 라인 또는 벽(바닥)을 잡거나 멈춰 선 경우 실격	-30 -20 -10	
공통 사항	* 평가 도중 장비(오리발, 마스크, 스노클)이 이탈되는 경우 감점(10) * 각 항목의 감점이 항목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점수 0점(공통사항 추가 감점 가능)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		

평 가 결 과	100	
제한시간 : 1분 10초	합 격	불합격
최종 평가기록 : 분 초		

인명구조사 2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3. 로프하강 및 등반

(제한시간 : 10분)

응시번호	성 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비물 : 기동복/화(활동복), 안전벨트(가슴등강기·카우스 테일이 포함된 상·하일체형 안전벨트), 안전장갑, 구조헬멧
- 평가장비 : 로프(11mm×35m), 안전로프(11mm×4m), 자동확보장비, 이동식 추락방지장비, 등강기(손, 풋 스텝1, 카라비너2), 푸르식 코드

진행 단계	평 가 항 목	항목 점수	평가 점수
준비	응시자는 평가장비를 휴대하여(로프는 3회 이상 감아 정리) 시작지점에 정위치한다. * 모든 장비는 평가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평가관에게 요구한다.		
준비 및 설치 (25)	1. “현장안전확인” → 확보물에 안전로프 설치(말뚝+움매듭) → 푸르식 코드로 자기확보 → 길이조절 및 안전로프 나비매듭 * 안전 로프를 안전벨트의 D형고리 이외 장비걸이에 걸착 또는 자기확보 잘못된 경우 감점 후 경고 미조치 실격 * 매듭 부적절(푸르식 매듭 정렬 등), 자기확보 길이가 부적절, 안전로프 매듭 위치 부적절한 경우 감점	-5	
	2. 1차 확보물에 말뚝매기 확보하고 로프 끝 이중움매듭 후 로프 투척 * 로프투척 시 투척지점을 확인치 않거나 “로프 또는 낙줄” 복창을 하지 않을 경우, 투척한 로프가 엉켰을 때, 조치를 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감점	-5	
	3. 로프 여유길이(1~3m) 조절 후 2차 확보물에 말뚝매기 및 움매듭 실시 * 매듭 부적절 또는 로프의 여유 길이(초과 또는 미만)을 실제 확인치 않고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감점	-5	
	4. 자동확보장비·이동식 추락방지장비 결합 후 장비점검 및 자기확보 해제 * 자동확보장비 및 확보장비의 결합이 잘못된 경우 감점 후 경고, 미조치 실격	-10	
하강 및 정지 (30)	5. “하강준비 끝” 복창 후 평가관의 지시에 따라 뒷걸음 또는 미끄러져 내려가는 자세로 하강 * 자기확보를 분리하지 않고 “하강준비 끝” 보고, 하강 시 하강자세 불안정 또는 점프하거나 실수로 미끄러짐, 손이 로프와 모서리 사이에 끼일 경우 감점 * 이동식 추락방지 장비에 락(정지)이 걸리는 경우 감점, 이를 제한시간 내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 실격	-10	
	6. 하강 정지 지점에서 정지 * 발이 정지선을 통과하지 않고 정지할 경우 감점 및 경고, 계속 진행하는 경우 실격 * 정지하지 못하고 바닥에 추락 또는 하강지역 지면 바닥에 신체가 닿을 경우 실격	-10	
	7. 자동확보장비를 이용한 정지자세 후 양팔을 벌리고 “하나, 둘, 셋” 복창하며 3초간 대기 * 정지자세 시 자동확보장비 잠금 미실시 감점 또는 잠금 전 제동손 이탈시 감점	-10	
등반 (25)	8. 등강기 걸착 → 가슴등강기 걸착 → 자동확보장비 해제 * 진행순서가 맞지 않거나 등강기에 주로프(하강로프) 연결하지 않은 등 등반장비 걸착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	-10	
	9. 장비교체 완료되면 “등반준비 끝” 복창 후 평가관의 지시에 등반 실시 * “등반준비 끝” 복창을 하지 않거나 평가관의 등반지시(평가관 점검)를 받지 않고 등반하는 경우 감점 * 등반자세 불안정 감점(몸이 벽에 부딪히는 경우 등), 최종 올라설 때 자세 불안정 감점 * 이동식 추락방지 장비가 허리 높이에 아래에 위치하거나 팔(겨드랑이) 안쪽에 위치 또는 보조로프가 늘어진 상태로 2회 등반 시 감점 후 경고, 경고 2회째 실격	-15	
철수 (20)	10. 등반완료 → 자기 확보 실시 → 등반장비 해제 * 자기확보가 선행되지 않고 장비해체 시 감점 후 경고, 경고 2회째 실격	-10	
	11. 로프끌어올림→로프정리(나비사리기)→자기 확보 해제→시작지점 정위치 “실시완료” 복창(모든 장비회수) * 철수 순서가 맞지 않으면 감점, 로프정리 상태(양쪽의 길이가 ±10cm 이내로 일정)가 불량한 경우 감점, 로프를 끝줄부터 두겹으로 사리지 않거나 로프정리 매듭을 3회 이상 감지 않은 경우 감점 * 로프를 정리(사리기)하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 실격	-10	
공동 사항	※ 각 항목 모든 카라비너 잠금상태가 불량(총점에서 1개당 10점 감점) ※ 안전지역에서 장비 떨어트림(총점에서 1개당 5점 감점) ※ 위험지역에서 장비 추락 시 해당 장비 사용 불가(총점에서 1개당 20점 감점, 임무수행 불가시 실격) ※ 각 항목의 감점이 항목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점수 0점(공동사항 추가 감점 가능)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	수량 수량 수량	총감점

평 가 결 과	100	
제한시간 : 10분	합 격	불합격
최종 평가기록 :	분 초	

인명구조사 2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4. 수직구조

(제한시간 : 15분)

응시번호	성 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비물 : 기동복/화(활동복), 안전벨트(상·하 일체형), 구조장갑, 구조헬멧
- 평가장비 : 로프(20m), 확보로프(2m), 코드슬링(7~8mm×1.4m), 테이프슬링(25mm×4m 3개, 25mm×8m 삼각줄(4.5m 2개), 코드슬링(7~8mm×2m 4개), 자동확보장비, 도르래(싱글2개,더블1개) 확보판, 스위벨, 카라비너(7개), 등강기, 바스켓들것, 마네킹

진행 단계	평 가 항 목	항목 점수	평가 점수	
준비	응시자는 평가장비(로프는 매듭을 풀지 않은 상태)를 지정된 구역 안에 장비별로 정렬하고 시작지점에 정위치한다. * 모든 장비는 평가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평가관에게 요구한다.			
들것 고정 (30)	1. “현장안전 확인” 복창 후 현장 위험요소를 확인 * 미실시 감점 2. 들것 1차 고정(골반부 → 가슴부 → 다리부), 들것 2차 고정 * 들것 1차 고정 매듭 등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 들것 2차 고정 매듭 등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 3. 삼각줄 걸착 및 푸르직 매듭 설치 * 삼각줄의 매듭위치 불량 및 3회 푸르직 매듭한 부분이 바르게 정렬되지 않은 경우 감점	-5 -15 -10		
수직 구조 (70)	4. 확보물매 확보지점 설치 및 카라비너와 확보판 연결 〈확보지점 : 개인로프를 4회 이상 감은 후 바른매듭+옴매듭 / 4회 중 가운데 2줄에 카라비너 걸착〉 * 로프매듭의 형태 등이 부적절한 경우	-10		
	5. 로프 매듭(두겹8자)→상단확보점에 도르래 및 로프 걸착→스위벨 연결→바스켓 들것 연결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 감점 * 로프의 방향과 도르래의 위치가 뒤틀려 로프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 감점, 로프매듭의 형태 등이 부적절하거나 고리의 크기가 카라비너보다 큰 경우 감점	-10		
	6. 로프를 자동확보장비에 연결 → 확보판에 걸착 → 로프 장력 * 자동확보장비가 뒤집어진(통과한 로프가 위쪽에 위치) 경우 감점, 장비 걸착 후 손으로 당겨 기본적인 로프 장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감점 * 확보장비에 로프를 반대로 설치한 경우 감점 및 경고, 이를 수정하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진행한 경우 실격	-10		
	7. 코드슬링을 이중피셔맨매듭으로 연결 → 주로프에 코드슬링 푸르직 매듭 실시 * 로프매듭의 형태 등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 3회 푸르직 매듭한 부분이 바르게 정렬되지 않은 경우 감점(단, 코드슬링 매듭의 잔여로프의 길이는 3cm이상) * 푸르직 매듭 시 코드슬링이 연결된 매듭 부위가 주로프 또는 카라비너에 닿는 경우 감점	-10		
	8. 도르래 등을 이용 5:1 직접 당김 장치 설치 * 도르래의 로프가 한바퀴 이상으로 꼬이거나 자동확보장비와 도르래가 심한 마찰을 일으킬 경우 감점, 로프 끝 이중옴매듭 안 했을 경우 감점 * 5:1직접당김시스템 도르래의 설치가 안될 경우 실격	-10		
	9. 바스켓 들것을 초기 인양하여 수평상태 확인 및 지면에 하강 후 수정 (응시자가 초기인양 후 들것 수평상태 양호로 판단되면 수정 없이 계속 진행 가능) * 수정 후 들것 머리쪽 높이가 다리쪽 보다 낮을 경우 감점 * 수정 후 다리쪽이 낮으나 기울기가 20° 이상일 경우, 수정 후 들것의 좌우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감점	-10		
	10. 바스켓 들것 최종 50cm이상 인양 후 “실시완료” 복창 * 등강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인양하는 경우 감점, 푸르직 매듭을 1회 이상 이동시키지 않거나 푸르직 매듭 이동 중 등강기가 로프에 걸착돼 있을 경우 감점 * 들것의 최저부 기준 인양 높이가 바닥에서 50cm이내인 경우 감점 * 인양을 실시하지 않거나 바스켓 들것이 지면으로 추락할 경우 실격	-10		
	※ 각 항목 모든 카라비너 잠금 상태 불량(총점에서 1개당 10점 감점) ※ 모든 매듭들 중 형태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은 경우 감점(총점에서 1개당 10점 감점) / (단 슬링의 잔여길이 제외) ※ 매듭의 형태(모양), 매듭과 보조매듭(ex-말뚝매기와 옴매듭)의 간격 3cm미만, 잔여로프의 길이(10~30cm)	수령 수령		총감점
	※ 요구조사의 들것고정 세부항목을 미실시 하는 경우 실격 ※ 각 항목의 감점이 항목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점수 0점(공통사항 추가 감점 가능)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			
	평 가 결 과			100
제한시간 : 15분		합 격	불합격	
최종 평가기록 :		분	초	

인명구조사 2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5. 맨홀 인명구조

(제한시간 : 8분)

응시번호	성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비물 : 기동복/화(활동복), 방화복 상의, 구조헬멧, 구조장갑, 공기호흡기 세트
- 평가장비 : 카라비너(5), 도르래(더블, 싱글), 로프[11mm/15m(3)], 로프(11mm/30m), 가스측정기, 랜턴, 요구조자용 안전벨트, 마네킹, 예비용 공기통, 역회전방지 도르래

진행단계	평가항목	항목점수	평가점수
준비	응시자는 평가장비(로프는 매듭을 풀지 않은 상태)를 지정된 구역 안에 장비별로 정렬하고 시작지점에 정위치한다. * 모든 장비는 평가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평가관에게 요구한다.		
준비 및 설치 (50)	1. 현장안전확인 → 가스측정<유해가스확인> → 랜턴을 이용 요구조자 확인 * “현장안전확인” / “가스측정” / “유해가스 있음” / “요구조자 확인” 미복합한 경우 감점 → 각종 점검 및 확인을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실시하는 경우 감점	-10	
	2. 실린더에 기구류기 후 맨홀내부 공기정화 실시(평가운영상 실린더는 잠시 개방 후 닫음) * 실린더 매듭형태(말뚝+움매듭/말뚝매듭, 잔여로프 길이) 및 지지점에 로프결착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 * 기구류기를 위해 실린더의 개폐구를 발로 밟아 고정하는 경우 감점 * 실린더가 바닥에 닿지 않음 또는 부딪혀 큰 충격(충격음)을 받거나 기구류기한 매듭이 풀린 경우 감점	-10	
	3. 역회전방지 도르래(프로트랙션 등)를 이용하여 4:1 도르래 설치 * 역회전방지 도르래의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 * 역회전방지도르래 반대로 설치 시 감점 및 경고, 미조치시 실격 * 매듭(두겹 8자)의 고리 크기가 카라비너보다 크거나 잔여로프 길이(10~30cm)가 부적절한 경우, 로프 끝에 이중움매듭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감점 * 4:1 도르래 시스템이 안된 경우 감점	-10	
	4. 움지도르래와 연결된 카라비너(연결점에 유도로프(두겹8자)설치, 낙줄 및 요구조자용 안전벨트 걸차 * 유도로프 매듭의 고리 크기가 카라비너보다 크거나 잔여로프 길이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 * 유도로프 설치 및 낙줄 또는 요구조자용 안전벨트를 미결착한 경우 감점 후 응시자가 직접조치	-10	
진입 및 구조 (50)	5. 공기호흡기 실린더개방 → 하단부에 매듭(고정매듭+움매듭) → 보조자(평가관)에 인계 → 면재 및 헬멧착용 → “진입준비완료” 복창 → 평가관의 “진입” 지시에 맨홀진입 * 매듭의 형태 및 잔여로프 길이 등 부적절한 경우, 헬멧이 벗겨지는 경우 감점 * 실린더 개방의 부적절 또는 면재의 부적절한 착용으로 공기가 새는 경우 감점 * 공기호흡기를 맨홀 진입 직전부터 양압으로 호흡으로 하지 않은 경우 실격 → 공기호흡기 면재착용 시점부터 양압으로 활동가능 * 잔압부족으로 인한 경보를 발생시 실격 * 실린더 개방시 0링 또는 공기호흡기의 이상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실격 <0링 및 용기 응급조치 가능>	-10	
	6. 요구조자 의식 확인 → 보조마스크 착용 실시 * 의식확인 전 요구조자의 팔을 먼저 올리거나 보조마스크 착용상태(위치 및 머리끈 조임 등) 부적절시 감점 → 내부 활동으로 인해 요구조자의 보조마스크 이탈시 10초 이내 조치하는 경우는 감점사항 아님	-10	
	7. 도르래시스템에 설치한 유도로프 견인 → 안전벨트 및 유도로프 분리 * 역회전방지 도르래에 로프가 걸려 연결점이 내려오지 않음시 평가관에게 요청(로프의 엉킴 및 매듭에 의한 것 제외) * 맨홀 진입 후 역회전방지 도르래 캠 잠김으로 연결점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평가관 조치) 또는 맨홀 진입 전 응시자가 역회전방지 도르래 캠 잠김으로 인해, 연결점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응시자 조치한 경우 감점 * 잘못된 도르래 시스템, 주로프가 시스템으로부터 이탈되는 경우 감점	-10	
	8. 마네킹에 요구조자용 안전벨트를 착용 → 시스템에 걸차 후 “실시완료” 복창 * 요구조자용 안전벨트가 뒤집혔거나 거꾸로 착용시 감점, 최종적으로 유도로프가 요구조자 안전벨트의 등에 있는 D형고리에 걸차되어있지 않은 경우 감점 * 요구조자 안전벨트 모두 걸속(양팔·가랑이)시키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 실격	-10	
공통사항	※ 각 항목 모든 카라비너 잠금 상태 불량(총점에서 1개당 10점 감점) ※ 안전지역에서 장비 떨어트림(총점에서 1개당 5점 감점) ※ 위험지역에서 장비 추락시 해당장비 사용 불가(총점에서 1개당 20점 감점, 임무수행 불가시 실격) ※ 모든 매듭들 중 형태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은 경우 감점(총점에서 1개당 10점 감점) ※ 매듭의 형태(오양), 매듭과 보조매듭(ex-말뚝매듭)의 움매듭의 간격 3cm미만, 잔여로프의 길이(10~30cm) ※ 각 항목의 감점이 항목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점수 0점(공통사항 추가 감점 가능)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	수령 수령 수령	감점
평 가 결 과		100	
제한시간 : 8분		합 격	
최종 평가기록 : 분 초		불합격	

인명구조사 2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6. 수평구조

(제한시간 : 10분)

응시번호	성 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준비물 및 평가 장비

- 준비물 : 기동복/화(활동복), 안전벨트(상·하 일체형), 레펠장갑, 구조헬멧, 퍼셀푸르직
- 평가장비 : 로프(11mm×40m, 11mm×20m), 확보판, 자동확보장비, 킥드로우, 등강기(손), 푸르직 코드, 역회전방지도르래, 텐덤도르래, 더블도르래, 싱글도르래, 카라비너(13), 코드슬링(7~8mm)

진행 단계	평 가 항 목	항목 점수	평가 점수
준비	응시자는 평가장비(로프는 매듭을 풀지 않은 상태)를 지정된 구역 안에 장비별로 정렬하고 시작지점에 정위치한다. * 모든 장비는 평가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평가관에게 요구한다.		
설치 (70)	1. “현장안전 확인” → 확보지점에 자기확보를 실시(퍼셀푸르직) * “현장안전확인”을 복창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자기확보 미실시 또는 안정된 확보물과 안전벨트 D형고리에 미결착시 감점 및 경고 미조치 실격	-10	
	2. 로프발사총 격발자세(평가운영상 로프총 사용불가)에서 “로프총 발사” 복창 후 5초간 대기(로프전개 과정) 후 견인줄 전달(평가운영상 로프전달을 “로프당기세요” 복창으로 같음) * “로프총 발사” 미복창 및 발사 자세(발사각도 45°이상) 부적절한 경우 감점 * 로프총 격발 후 5초간 대기하며 “하나 ~ 다섯”을 복창 및 “로프당기세요” 복창하지 않은 경우 감점	-10	
	3. 확보지점에 확보판 설치 → 자동확보장비에 로프를 연결 후 확보판에 걸착 → 손으로 당겨 로프 장력을 유지 * 상단에 설치해둔 로프에 걸착된 카라비너 및 확보지점에 주로프 또는 도르래를 걸착하는 경우 감점 * 자동확보장비에 로프를 반대로 걸착하는 경우 감점 및 경고, 수정하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진행하는 경우 실격 * 자동확보장비를 확보판 걸착 후 손으로 당겨 도르래설치 전 기본적인 로프 장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감점	-15	
	4. 간접당김도르래시스템 6:1 당김장치 설치 후 푸르직코드를 이용하여 로프 당김 * 직접 당김으로 설치하거나 간접당김 6:1도르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간접 도르래시스템을 2회 이상 리셋시켜 로프를 당기지 않거나 로프 장력이 미흡한 경우 “0점” 처리 * 도르래로프를 당긴 후 자동확보장비의 주로프를 당겨주지 않는 등 운용능력이 부족한 경우 감점 * 도르래 시작매듭(에반스)의 매듭 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 3회 푸르직 매듭한 부분이 바르게 정렬되지 않은 경우 감점, 로프 끝에 이중매듭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감점 * 확보판과 도르래 사이가 한바퀴 이상 틀어지거나 밀접하여 큰 마찰을 일으킨 경우 감점 * 도르래를 확보판에 단독으로 걸착하지 않고 주로프 카라비너에 걸착하는 경우 감점	-10	
	5. 당겨진 주로프를 확보판 카라비너에 매듭(두겹 8자)을 실시하여 2차 안전확보 실시 * 2차 안전확보 전, 자동확보장비 잠금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감점 * 2차 안전확보 매듭 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 감점. (여유로프 50~100cm) * 2차 안전확보 미실시 하는 경우 감점 및 경고, 미조치 실격	-10	
진입 (30)	6. 도하장비 준비(등강기, 코드슬링), 진입도르래설치(텐덤, 역회전방지도르래), 안전벨트(신체)에 진입장비걸착, 역회전방지도르래 캠 잠금 → 2차확보(킥드로우+자기확보줄) 및 도하장비 설치, 자기확보줄 해제 → “도하준비 끝” 복창 → 평가관의 지시에 도하 → 도하완료 후 자기확보 실시 → 실시완료 * 도하장비의 코드슬링의 길이가 응시자 신체와 맞지 않는 경우 감점 * 자기확보줄 해제 및 2차확보 미실시 상태에서, “도하준비 끝” 복창하는 경우 감점 및 경고, 미조치 실격 * 도하완료 후 자기확보 미실시한 경우 감점 및 경고, 미조치 실격 * 역회전방지 도르래의 잠금을 하지 않고 도하하거나 횡단중 등강기가 역회전방지도르래 사이에 낀 경우 감점 * 역회전방지 도르래를 반대 방향 또는 뒤집힌 방향으로 설치하여 도하하는 경우 “0점” 처리 * 진입장치의 카라비너가 벨트에 걸함이 안된 상태로 “도하준비 끝” 복창하는 경우 “0점” 처리 및 경고 미조치 실격 * 도하 중 신체가 위험지역 지면에 닿은 경우 실격	-10	-20
공통 사항	※ 각 항목 모든 카라비너 잠금 상태 불량(총점에서 1개당 10점 감점) ※ 안전지역에서 장비 떨어트림(총점에서 1개당 5점 감점) ※ 위험지역에서 장비 추락시 해당장비 사용 불가(총점에서 1개당 20점 감점, 임무수행 불가시 실격) ※ 모든 매듭의 형태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은 경우 감점(총점에서 1개당 10점 감점)<도하장비 코드슬링 제외> * 매듭의 형태(모양), 매듭과 보조매듭(ex-말뚝매기외 울매듭)의 간격 3cm미만, 잔여로프의 길이(10~30cm) ※ 각 항목의 감점이 항목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점수 0점(공통사항 추가 감점 가능)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	수량	총감점

평 가 결 과		100
제한시간 : 10분	합 격	불합격
최종 평가기록 :	분 초	

인명구조사 2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7. 교통사고 인명구조(에어백)

(제한시간 10분)

응시번호	성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준비물 및 평가장비

- 개인장비 : 기동복/화(활동복), 방화복상의, 허리벨트(선택), 구조헬멧, 보안경, 구조장갑
- 평가장비 : 고임목, 휴대용윈치, 에어백세트, 버팀목(규격 4(10)×4(10)×50cm), 마네킹

진행 단계	평가 항목	항목 점수	평가 점수
준비	응시자는 평가장비를 지정된 구역 안에 정렬하고 시작지점에 정위치한다. * 모든 장비는 평가 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평가관에게 요구한다.		
현장 확인 (5)	1. “현장안전확인” 복창 → 차량 내외부 위험요소 확인 → 요구조자 파악 → “차량 하부 요구조자 1명” 복창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하거나 일부항목을 미 실시 또는 정확한 동작을 취하지 않고 형식적인 경우		-5
안전 조치 (20)	2. 유관기관 및 대원에게 “차량을 통제하십시오.”, “소화기를 배치하십시오.” 복창하여 지시		-5
	3. “고임목 고정 복창” 차량 앞/뒷바퀴에 고임목을 밀착하여 고정(4개) * 고임목을 밀착하여 고정하지 않는 경우 감점		-10
	4. “차량안정화 확인” 복창 → 운전석 문 개방 → 차량내부를 확인하며 “기어(P)확인” “시동정지” “제동장치확인” 복창 *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인 복창만 한 경우 감점, 차량내부를 확인할 때 차량에 탑승하거나 신체로 차량에 하중을 증가시키는 경우 감점		-5
응급 처치 (5)	5. “괜찮으십니까? 어디가 가장 불편하십니까?” 복창하며 요구조자의 의식확인 후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하십시오.” 복창하여 요구		-5
원치 운용 (20)	6. “휴대용윈치 장비점검” 복창 후 장비를 점검하고 순서에 맞게 설치 [순서] 원치 설치 → 차량에 와이어 결착 → 윈치에 와이어 결착 → 걸림장치 작동 → 레버조작 → 적절한 장력 유지(완료)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하거나 조작레버 등 작동능력이 미흡한 경우 감점 * 휴대용윈치 미 설치 또는 와이어 연결 부적절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한 경우 실격 * 에어백 운용 전까지 고임목 고정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 후 최종득점에서 “-30점” 감점, 미초치시 실격		-20
에어백 운용 및 구조 (50)	7. “에어백 장비점검” 복창 후 압력계이지 등 장비를 점검하고 순서에 맞게 결합·설치 [순서] 압력조절기와 공기용기 결합(사전 결합상태로 실시) → 압력조절기와 조정기연결 → 조정기와 에어백연결 → 실린더개방 → 공기압력조절(7~8bar) → 에어백 위치선정 및 버팀목준비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하거나 장비결합능력이 미흡한 경우 감점 * 공기압력조절이 부적절하거나 호스가 분리되는 경우 감점 * 요구조자의 위치를 판단하지 않은 에어백의 인양 위치 및 걸침 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		-30
	8. 에어백조작 및 버팀목설치 → 차량 인양 후 “구조완료” 복창 * 한 에어백만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한 번에 버팀목 1개 이상의 높이만큼 인양한 경우, 버팀목 “#자형”으로 반듯하게 쌓아 올리지 않거나 버팀목의 끝이 5~10cm 남도록 겹치지 않는 등 고정 상태가 불량한 경우 또는 최상단 버팀목이 차량의 방향에 부적절한 경우 감점 * 차량 밑(손이 끼일 수 있는 위치)에서 버팀목의 옆면을 파지하지 않고 뒷면에 손이 올라오도록 파지하는 경우, 목표치까지 인양 후 차량이 고임목에 살짝 걸릴 수 있도록 에어백을 낮추지 않은 경우, 중량이 버팀목이나 에어백으로 쏠려 장비가 이탈할 경우, 에어백과 버팀목의 위치가 올바르지 않거나 에어백조작이 부적절하여 차량이 요구조자의 방향으로 기운 경우 감점		-10
	※ 장비운용능력 불가 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장비의 파손(파손예상)과 안전상 진행이 불가하다 판단된 경우 실격 ※ 평가표에 제시된 복창을 하지 않은 경우 매회 5점 감점 ※ 각 항목의 감점이 항목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점수 0점(공통사항 추가 감점 가능)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		-10
공 통		수량	총감점

평 가 결 과		100	
제한시간 : 10분	합 격	불합격	
최종 평가기록 :	분 초		

인명구조사 2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

7. 교통사고 인명구조(유압장비)

(제한시간 10분)

응시번호	성 명	(서명)	평가관	(서명)
------	-----	------	-----	------

○ 준비물 및 평가장비

- 개인장비 : 기동복/화(활동복), 방화복상의, 허리벨트(선택), 구조헬멧, 보안경, 구조장갑
- 평가장비 : 고임목, 휴대용윈치, 유압장비세트, 마네킹

진행 단계	평 가 항 목	항목 점수	평가 점수
준비	응시자는 평가장비를 지정된 구역 안에 정렬하고 시작지점에 정위치한다. * 모든 장비는 평가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평가관에게 요구한다.		
현장 확인 (5)	1. “현장안전 확인” 복창 → 차량 내·외부 위험요소 확인 → 요구조자 파악 → “차량내부 요구조자 1명” 복창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하거나 일부항목을 미실시 또는 정확한 동작을 취하지 않고 형식적인 경우 감점		-5
안전 조치 (15)	2. 유관기관 및 대원에게 “차량을 통제하십시오”, “소화기를 배치하십시오” 복창하여 지시 3. “고임목 고정 복창” 차량 앞/뒷바퀴에 고임목을 밀착하여 고정(4개) * 고임목을 밀착하여 고정하지 않는 경우 감점		-5 -10
윈치 운용 (20)	4. “휴대용윈치 장비점검” 복창 후 장비를 점검하고 순서에 맞게 설치 [순서] 윈치 설치→차량에 와이어 걸착→윈치에 와이어 걸착→걸림장치 작동→레버조작→적정한 장력유지(완료)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하거나 조작레버 등 작동능력이 미흡한 경우 감점 * 휴대용윈치 미설치 또는 와이어 연결 부적절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한 경우 실격 * 유압장비 운용 전까지 고임목 고정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 후 최종득점에서 “-30점” 감점, 미조치시 실격		-20
유압 장비 결합 (10)	5. “유압장비 점검” 복창 후 장비의 외관과 연료 및 유압을 점검하고 유압장비를 결합 “유압엔진펌프 시동” 복창 [순서] 전원스위치(ON) → 초크밸브 확인 → 액셀레이터 시동위치(½지점) 레버조작(장비조건에 따라 레버조작) → 유압엔진펌프 시동 → 초크밸브 확인 * 시동 전 레버 조작을 누락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감점 * 유압장비 결합 및 조작 불가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시동을 걸지 못한 경우 실격		-10
구조 단계 (50)	6. “유압 레버 개방” 복창 하며 유압 레버 개방 및 액셀레이터 작동위치(RPM ⅔이상) “보닛개방” 복창 후 유압장비를 전개하여 보닛을 개방 “배터리차단”, “(-)(+)제거” 복창하며 배터리를 차단(복창으로 같음) * 액셀레이터 ⅔이상 RPM에서 운용하지 않거나 유압레버 개방을 누락한 경우 감점 * 배터리(-)를 우선차단 하지 않은 경우 감점		-10
	7. 「차량문개방(제거)」 “헨더압착” → “경첩노출” → “경첩절단” → “차량문개방” 각각 복창하며 유압장비를 조작하고 차량문을 개방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 일부항목 미실시, 작동능력미흡, 장비가 실제 실행지점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감점		-5
	8. “차량안전화 확인” 복창 → 차량내부를 확인하며 “기어(P)확인”, “시동정지”, “제동장치확인” 복창 *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인 복창만 한 경우 감점		-5
	9. “괜찮으십니까? 어디가 가장 불편하십니까?” 복창하며 요구조자의 의식확인 후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하십시오.” 복창하여 요구		-5
	10. 시트(운전석) 레버를 조작하여 공간 확보 시도 및 안전벨트 제거		-5
공 통	11. 계기반 전방이동 후 “구조완료” 복창 [순서] “A필라 내부구조 확인” → “A필라 기단부 절단” → “A필라 절단” 복창하며 유압장비를 조작→엔진펌프의 액셀레이터 낮춤→유압레버 닫음→유압공비 분리→유압램연결→유압레버 개방→액셀레이터 작동위치(RPM ⅔이상)→유압램을 조작→계기반을 전방이동 및 구조공간을 확보→ “구조완료” 복창 *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 일부항목 미실시, 작동능력미흡, 장비가 실제 실행지점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감점		-20
	* 장비운용능력 불가 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장비의 파손(파손예상)과 안전상 진행이 불가하다 판단된 경우 실격 * 평가장비에 따라 예외사유 있을시, 복창으로 같음(예 : 유압레버가 없는 장비인 경우 등) * 장비조작 중 시동이 꺼지는 경우 재시동하여 평가를 진행해야하며 장비상 문제는 감점 아님 * 평가표에 제시된 복창을 하지 않은 경우 매회 5점 감점 * 각 항목의 감점이 항목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점수 0점(공통사항 추가 감점 가능) * 평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실격	수량	총감점

평 가 결 과	100	
제한시간 : 10분	합 격	불합격
최종 평가기록 :	분 초	